

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6조 (서비스 이용계약)

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도 계약할 수 있다.

제7조 (서비스 이용계약 목적)

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의 장기요양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,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.

제8조 (계약 당사자)

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은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, 친척, 또는 법정 대리인이나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.

제9조 (계약기간)

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.

- 1) 본 기관의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- 2)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.

제10조 (계약해지)

이용규칙 및 본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일으킬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) 본 기관의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- 2) 이용자는 본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, 신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1조 (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 부담액)

- 1)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진행한다.
- 2)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해 청구하며 특별한 경우(국민기초수급대상자 등)에 있는 요양환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, 공단 지정에 따라 요양환자는 6~15%의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.
다만, 등급이 없는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. (이 경우에도 실비로 하되,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)

3) 본인부담금 납입

- ① 기관은 매달 수급자(보호자)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24. 급여비용명세서’를 발급한다.
- ② 본인부담금청구서와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(보호자)는 매월 2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 이를 증명하는 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25.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’를 수급자(보호자)에게 발행하고 시행규칙 별지 34.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.
- ④ 수급자(보호자)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(연말정산 등) 3항 별지25.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
- 4)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5) 수급자 요양에 필요한 주택의 수도, 가스, 전기 등에 관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
- 6) 월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.

(매년 변경되는 금액은 홈페이지 및 알림판에 게시하고 운영규정에 별첨한다)

제12조 (이용료 비용의 변경)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1)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2)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
- 3)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“장기요양급여제공(이용)계약서”를 별도로 작성한다.

제13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)

기관과 수급자(신원인수인)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.

- 1) 기관(요양요원)의 의무
 - ①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
 -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
 - ③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 지침에 따른 성실 제공 의무
 - ④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(급여제공 기록지)을 통보할 의무
- 2) 수급자(보호자)의 의무
 - ①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
 -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 - ③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할 의무
 - ④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의 과도한 요구 금지 의무
 - ⑤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

3) 수급자(보호자)의 권리

-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
-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
- ③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④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
- ⑤ 요양요원 등 기관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
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한 존경을 받을 권리
-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
- ⑦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
- ⑧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

4)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
- ② 수급자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
-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-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, 불편사항,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5)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공개의 의무
- ②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
- ③ 인정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⑤ 수급자가 병원 입·퇴원 시 절차,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